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391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세희(기소), 김민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판 결 선 고 2026. 5.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권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경부터 2025. 1. 15.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매 중인 화장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B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등록번호 E)'을 화장품 포장 상자의 겉면에 인쇄된 이미지와 그 제품의



배경 이미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전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저작물이 부착된 화장품상자 안에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배포권이 소진되었다. 피고인이 화장품을 배포하기 위해 이 사건 저작물의 사진을 찍어 판매하는 것은 배포권과 관련된 것으로 허용된다.

2) 피고인은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 및 화장품 포장상자를 촬영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부수적 복제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고소인의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촬영하여 활용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권리소진 주장에 대한 판단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저작권법은 제20조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



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저작권자의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의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참조). 다만, 권리소진의 원칙에 의하여 소진되는 권리는 배포권에 한정되므로,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의 권리는 소진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촬영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수적 복제 해당 여부

가)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촬영 등의 과정에서 창작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물 이용자의 부수적 이용행위가 개인적 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기존의 '저작권제한' 규정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등 참조)와 함께 위 취지를 고



려할 때, 부수적 복제는 양적·질적으로 그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저작물 전체의 모습이 온전히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하는 이미지를 편집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 자체를 촬영하였고, 이후 편집하여 게시한 이미지의 구도, 전체 이미지에서 이 사건 저작물이 차지하는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하다거나,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이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3) 저작물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 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



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촬영한 후 편집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한 목적은 이 사건 저작물 자체를 이용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전자상거래 구매자에게 제품의 상태, 정품 여부를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②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판매자가 제품의 외관이 나 상품박스의 겉면을 직접 촬영하여 구매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피고인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게 상품을 설명하고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이 포함된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상품판매를 위하여 편집하여 게시한 이미지는 이 사건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 위에 상품박스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편집되었다. 이 사건 저작물은 주요 부분이 가려진 상태로 게시되었고, 상품박스에 인쇄된 이 사건 저작물도 제한적으로 보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이미지의 저작물은 불완전한 상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의 디자인이나 미적 가치를 온전히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

④ 구매자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이미지를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뿐, 주요 부분이 가려진 불완전한 저작물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한도 _____